

공동구관리규정

제정 1994.12.31 규정 제182호
전문개정 1999. 8.20 규정 제299호
개정 2001. 4.23 규정 제362호
2003.11. 7 규정 제453호
2007. 6.15 규정 제588호
2008.12.11 규정 제620호
2013. 9.10 규정 제7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 받은 공동구 구조물 및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동구 유지관리는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② “공동구 본체”라 함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 ③ “점용기관”이라 함은 공동구 본체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을 수용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 ④ “점용시설”이라 함은 점용기관이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을 위하여 공동구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⑤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배수설비, 급수 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말한다.
- ⑥ “유지”라 함은 공동구 본체와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
- ⑦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큰 부분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제4조(관리범위 및 방법) 공동구 유지관리 범위는 위탁관리 계약에 명시된 관리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방법은 별도의 운영 계획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제도) 공동구관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근무제도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3.9.10)

제2장 유지관리업무

제6조(업무범위) 공단이 수행하는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 일상유지관리

2.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 작성 및 관리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4.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 점검·조치 등 관리
5.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6. 점용자의 공동구내 공사승인 및 공동구 내부 출입승인
7. 기타 서울특별시 조례와 공동구위탁관리협약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03.11.7 본조개정)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처장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2013.9.10)

제8조(점검업무) 공동구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상점검 : 내·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2.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3.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점용자 또는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시행
 4.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점검
 -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03.11.7 본조개정)

제9조(정밀안전진단)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현장관리)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직원을 배치한다.

1. 공동구 구조물 점검 및 기록유지
2. 공동구 부대시설 통상적인 관리점검 및 보수
3. 공동구출입자 통제
4. 공동구내 공사현장 확인점검
5.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
6. 비상시 상황보고 및 관련기관 연락통보

제11조(공사시행)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점용시설물 관련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시행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2013.9.10)

제12조(공동구 출입통제) ①공동구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출입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출입자가 점용기관 직원이거나 공무원 신분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관리소장이 공동구 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단서신설 '07.6.15)(개정 2008.12.11, 2013.9.10))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해 출입승인된 경우라도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동구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3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점용시설의 장애 및 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점용기관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당해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부 칙('99.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8.12.11, 2013.9.10)

공동구내 출입신청서						
아래와 같이 공동구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명(회사명)		소 속 :				
		직 위 :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공동구명				출입기관 (시공업체)		
출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대 표		
	20 년 월 일 까지			전화번호		
출입허가인원	외 명			출입목적		
출입자소속기관의 책임이행서 및 보안각서						
<p>1. 본인의 위 공사건으로 귀사를 출입함에 있어 귀사내의 시설물을 보호하고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하오며,</p> <p>2. 본 출입자 소속기관은 위 각서인의 신분은 물론 귀사에 끼친 재산상 또는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오며, 각서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p>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인)	연락처
1						
2						
첨부 서류	<p>1. 점용기관 : 재직증명서 혹은 해당기관 신분증 사본</p> <p>2. 시공업체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p> <p>3. 출입자명단</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의 :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된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은 면허번호 삭제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된 사본)</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

신청서에 입력하는 정보는 공동구 출입승인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사본, 전화번호(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책임자), 문서보유기간 10년

(신청인 또는 점용기관은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